영주시 공고 제2023 - 337호

「영주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리고,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「행정절차법」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3월 2일

영 주 시



영주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

1. 제정이유

2022년 9월 태풍'힌남노'당시 포항시 소재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침수사고로 많은 인명이 희생되었음. 이에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택의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침수방지시설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 기준 등에 관한 사항 (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)
- 나. 사후관리 및 타 기관과의 협력 등에 관한 사항(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)
- 다. 다른 조례와의 관계 등에 관한 사항(안 제13조)

3. 제정조례안 : 붙임

4. 의견제출

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22일까지 의견을 영주시장(참조 안전재난과장)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, 전화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PC통신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 · 반 여부와 그 사유)

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 주소, 연락처

다. 기타 참고사항 등

※ 우) 경북 영주시 시청로 1(휴천동 470)

받는사람: 영주시장(참조: 안전재난과장)

연락전화 : (054)639-5971

E-mail: newchszz@korea.kr, FAX: (054)639-5980

영주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풍수해로부터 영주시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택의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 - 1. "풍수해"란 「자연재해대책법」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.
 - 2. "침수방지시설"이란 풍수해로부터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주택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구 등에 설치하는 물막이판 등의 시설을 말한다.
 - 3. "주택"이란「주택법」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말한다.
- 제3조(시장의 책무) 영주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풍수해로부터 영주시민(이하 "시민"이라 한다)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풍수해의 예방 시설을 설치하거나,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제4조(시민의 책무) 시민은 소유주택에 대한 침수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한

조치를 하여야 하며, 시장의 행정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.

- 제5조(지원계획의 수립·시행) ① 시장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(이하 "지원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 - ② 시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「지하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수방기 준」을 고려하여 지원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 - ③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 - 1.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
 - 2.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절차 및 지원대상
 - 3.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예산 규모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
 - 4. 관리실태조사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
 - 5. 그 밖에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 -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·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, 발생할 위험이 큰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.
 -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·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.
- 제6조(지원대상 및 우선순위) ① 시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,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주택의 출입구에 소유자·점유자·관리 주체가 신청하는 경우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, 그에 따른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 다만,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

- 우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.
-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,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하는 주택을 우선 지원하여야한다.
- 1. 「지하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수방기준」제2조제2호 및「건축물의 설비 등에 관한 규칙」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지역의 주택
- 2. 과거 침수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의 주택
- 3. 「공동주택관리법」제2조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 하지 않는 소규모 공동주택
- 4. 하천 인접 또는 하천의 최고수위보다 낮은 지역의 주택
- 5. 저수지 인근 저지대 지역 주택
- 6. 「자연재해대책법」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침수흔적도 및 침수예상도에 침수 흔적이나 침수 범위를 표시한 지역의 주택
- 제7조(설치규격) 침수방지시설은 침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현장여 건에 맞게 적정한 규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.
- 제8조(예산 편성 등) ① 시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,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에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.
 - ② 예산 규모·지원절차 등은 제5조제1항의 지원계획에 따른다.
- 제9조(지원기준)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. 다만, 「공동

주택관리법」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된 공동주택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.

- ② 제1항에 따른 설치비용 지원액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- 1. 단독주택 : 설치 개소 당 2백만원 이하
- 2. 공동주택 : 설치 개소 당 5백만원 이하
- 3. 자동 운행 물막이판 설치 시 지원액 한도는 별도로 정할 수 있음
- 제10조(사후관리)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아 주택 등에 설치된 시설을 「지하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수방기준」에 따라 적절하게 유지·관리하여야 하며, 설치완료일 기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사후관리를 위한 관리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.
 -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해 지원 대상에게 직접 자료를 제출받거나, 관계 공무원이 방문 조사 등을 할 수 있다.
 - ③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 따라 시설물 유지관리업 등 관련 자격을 가진 자에게 사후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있다.
- 제11조(홍보 등) ① 시장은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주택의 소유자·점유자· 관리 주체에게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
 - ② 시장은 침수흔적도, 침수예상도 등 과거의 침수 이력에 대한 정보를 주택의 소유자·점유자·관리 주체에게 제공하여야 한다.
 - ③ 시장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영주시 홈페이지 및 시보 등을 통하여

홍보할 수 있다.

- 제12조(협력체계 구축·운영) 시장은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수 자원 분야 또는 자연재해 전문 기관·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·운영할수 있다.
- 제13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자치법규명	
검토사항	
주요내용	 ※ 자치법규안에 대한 조문별 찬성·반대 여부와 그 이유 등을 기재합니다. (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도 붙임으로 작성합니다.)

상기와 같이 자치법규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.

의 견	소속 또는 주소	연 락 처	
제출자	성 명	(서명	또는 날인)